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79
----------	-------

발의연월일 : 2026. 7. 6.

발 의 자 : 최은석 · 진종오 · 이종배
구자근 · 강대식 · 신성범
김상훈 · 한지아 · 김성원
김장겸 · 서일준 · 송언석
이종욱 · 김태규 · 김기웅
이준석 · 박덕흠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되, 경감받는 세액을 최대 75만원(조례에 따른 추가 경감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실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 취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감면 규모도 크지 않아 인구감소지역등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득세 감면 대상을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 수준을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9항 신설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5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중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감면받는 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8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76조제2항”을 “제75조제9항, 제76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 ⑧ (생략)</p> <p><u><신 설></u></p>	<p>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 ⑧ (현행과 같음)</p> <p><u>⑨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u></p>

<신 설>

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감면받는 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8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

<p>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u>제76조제2항·제3항</u>, 제77조제2항·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p> <p>② · ③ (생략)</p>	<p>----- ----- ----- -----<u>제75조제9항, 제76조</u> <u>제2항</u>-----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